

경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복지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
3. 교수학습·생활복지·상담·진로·시설 등의 지원사항
4. 장애학생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5. 교육기자재 등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6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보고 및 편성계획 수립
7.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는 학생처 산하에 두며,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,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직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특별지원위원회) ① 센터운영과 장애학생(소수집단학생)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규정 제·개정 및 폐지
3. 장애학생(소수집단학생)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(소수집단학생)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(소수집단학생) 지원 개선·발전방안에 관한 주요사항
6.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7. 장애학생(소수집단학생) 차별 사건에 관한 사항
8. 기타 센터운영 및 장애학생(소수집단학생)과 관련된 중요 사항

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와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

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생지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5조(재정 및 예산) 센터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제6조(관계부서의 협조기타)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)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